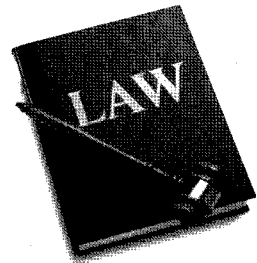


정부 및 유관기관 법령정보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025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25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취지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기본 모델수를 축소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인증기관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마련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세부안전 적용기준을 통합·조정하여 기업부담 경감(안 별표 7 및 별표 8)

1) 소비전력, 정격정류 등의 범위구분을 통합·조정하여 기업이 받아야 하는 기본모델 수를 축소

나.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개정(안 제14조의1, 제18조의1)

- 1)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현황을 매 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이미용기기의 세부 품목 중 「의료기기법」에 따라 이중규제 되는 품목 제외(안 별표2)

- 1)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대상과 중복되는 피부관리기 등 12개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 세부범위에서 제외

라. 기타 개정사항

- 1) 법제처의 행정규제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고시 정비
- 2) 조명기구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자체검사 시험항목 정비
- 3) 안전관리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세부품목에 대한 세부적용 안전기준 마련 등

3. 문 의

개정(안)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협회 및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연락처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2, 마리오타워 310호
- 전화번호 : 02-809-8300(FAX : 02-890-8309)
- 홈페이지 : <http://www.ekesa.or.kr>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2-509-7245(FAX : 02-507-6657)
- 홈페이지 : <http://www.kats.go.kr>